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(강선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71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27.

발 의 자 : 강선영 · 이만희 · 유용원
박준태 · 고동진 · 이인선
김정재 · 성일종 · 조지연
서명옥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행안전구역 중 핵심적인 안전확보구역인 제1구역(장애제거구역)의 경우 군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·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·재배 또는 방치를 금지하고 있음.

그런데 제1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을 군사시설로 광범위하게 규정하여, 군용항공기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필수시설뿐만 아니라 그 밖의 군사시설 또한 설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비행안전 제1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을 군용항공기의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로 명확히 한정하여 안전한 군용항공기 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1항제1호).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군사시설”을 “군용항공기의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비행안전구역에서 시설물의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행안전구역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(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) ①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(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다)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10조(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제1구역에서 <u>군사시설</u> (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을 포함한다)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·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·재배 또는 방치. 다만, 가장 높은 표면의 높이가 제1구역의 기본표면 표고를 초과하지 않고 군용항공기(민간항공기도 포함한다)의 이륙·착륙 및 비행에 방해 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치되는 다음 각	1. ----- <u>군용항공기의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관할부 대장과 협의하여 제외한다.	----- ----- -----.
가.·나. (생 략)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